



법률관련광고

건설산업기본법(협회관련)

건설업법 개정법률공보 1997.7.1 법률 제5230호

제2장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

제9조 (건설업의 면허)

① 일반 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전문건설업의 등록)

① 전문건설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건설교통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등록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 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건설업자의 견업제한)

- 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고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자의 면허를 중복받을 수 없다.
- ②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제 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 받을 수 없다. 다만, 도급받는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다.

②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 시공하여야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 받아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 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일반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공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3.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4. 제1항단서 제2항단서 및 제3항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수수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 1호 내지 3호 생략
4.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자.
5.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자.

제11장 별 칙

제93조 내지 제95조 생략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한자.
2.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3조 생략.

제4조(기존가스시설 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한자는 법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 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온돌 시공업의 등록.

제15조(기존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업종별 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2장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

제5조(건설업의 업종등)

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과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제5조 관련)

구 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비 고
전문건설업	29.온돌시공업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공사	온돌설치공사	총30개업종

<별표2>건설업 면허기준(제7조 1항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온돌시공업	국가자격법에 의한 온돌기능 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양성교육 을 받은자.		1. 사무실(전용면적10제곱미터) 2. 파이프머싱, 파이프렌지 파 이프리머, 용접기, 압력계측 기, 전기테스트기, 각대.

제6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 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중 일반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일반공사”라 한다)는 1건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전문건설공사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가스설비공사
- 나. 특정열사용 기자재 설치공사
- 다. 철강재설치공사
- 라. 승강기 설치공사
- 마. 철도 케도 공사
- 바. 온돌공사

제7조(건설업의 면허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 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 및 장비는 <별표2>와 같다.

제8조(전문건설업의 등록업종 및 등록기준)

①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은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 중 다음 각호의 업종으로 한다.

1. 가스설비공사업(제1종내지 제5종)
2. 특정열사용기자재 시설공업(제1종내지 제5종)
3. 온돌시공업
4. 시설물 유지관리법

제19조(부대공사의 범위)

①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

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로서 시공상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예정 금액이 전체공사 금액의 2분지 1이상인 때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1>중 기계설비공사업, 온돌시공업, 특전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및 가스설비공사업(2종내지 5종에 한함)에 속한 공사중 2이상의 업종에 속한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그중 1개의 업종에 관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도급받은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다.

제 2 장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

제7조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건설업의 업종별 등록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의 국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 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 가스 시설공사
- 나.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 라. 삭도설치공사
- 마. 승강기 설치공사
- 바. 철도 궤도공사
- 사. 온돌공사

제14조 (전문건설업의 등록업종 및 등록기준)

①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의 건설업종 중 다음 각 업종을 말한다.

1. 승강기 설치공사업
2. 가스시설시공업(제1종내지 제5종)
3.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1종내지 제5종)
4. 온돌시공업
5. 시설물유지 관리법

②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

①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면허받거나 등록할 수 있는 범위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5개 업종 까지로 한다.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

- ①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전체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내지 제5종에 한한다)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 제8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3항 보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복합된 건설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서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 ①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상황.
 7.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

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 안정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제7조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29.온돌시공업	건축물등에 온돌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온돌설치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수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1종 내지 제4종에 한한다) 및 온돌시공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

〈별표 3〉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제14조 제2항관련)

제5종 정한 기술능력	오른쪽란에 규정한 기술능력을 갖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 관련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사2급이상·고압가스기능사2급이상·고압가스 취급기능사1급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교육(고압가스기계 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도시가스 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내지 제3종의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p>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3.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내지 제3종 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	--

6.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1종 및 제2종에 한한다)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m²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고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3종에 한한다) 및 온돌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150m²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별표 5〉

건설업면허 등의 수수료액 (제38조 제1항 관련)

신청내용	수수료
1. 건설업 면허 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다. 전문공사업	6만원 9만원 2만원
2. 건설업면허 갱신 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다. 전문공사업.	5만원 7만원 1만 5천원
3. 전문건설업 등록	1만원
4. 건설업면허(등록)증 또는 면허(등록)수첩 재교부.	2천원
5. 건설업양도·법인합병·상속인가.	2천원
6. 건설업분쟁조정	5만원

4. 온돌사공업

가. 신청자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온돌기능사의 양성 교육을 받은 자.

나. 장비

파이프머싱, 파이프렌치, 파이프리미, 용접기, 압력계측기, 전기테스트기 각 1대.

전문건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번호)	
	⑦ 신청업종	⑧ 면허 또는 등록한 건설업		
	⑨ 공제조합출자	⑩ 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input type="radio"/> 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input type="radio"/> 광역시장				
<input type="radio"/> 도지사				
구비서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5의 수수료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공사용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3. 건설공사용장비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등본 4. 신청인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5.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6.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일반건설업(조경공사업은 제외), 가스시설시공업2종은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면허증사본 7.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는 같은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영업소등기부등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

전문건설업등록증

업 종 :

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영업소소재지 :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등록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

도지사

변경사항

변경년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자(인)

210mm × 290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전문건설업등록수첩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개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등록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

도지사

100mm × 135mm

인쇄용지특급 120g/m²